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2. 12. 8(목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1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

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, 결산 금액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초과부 해당금액 적립 및 세수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전출 활용

5.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 말 조성액@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	비고
		수입®	지출ⓒ	증감 예= b -ⓒ	@= d +a	-17-
통 합 재 정 안정화 기금	17,779,596	497,829	0	497,829	18,277,425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	융자금	지역개발채권	총 조성규모
	조성액ⓐ	미회수 채권(b)	미상환잔액ⓒ	예=@+Ю-©
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	18,277,425	0	0	18,277,425

다. 자금 운용 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
계	497,829	269,928	227,901	
이자수입	497,829	269,928	227,901	

○ 지출계획 : 없음

6. 검토의견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각종 회계, 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16조 및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근거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음.

○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

-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결산 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○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

-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-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본 계획안은 세수여건 악화시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하기 위함으로 금천구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됨. 향후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세밀히 검토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붙임: 관련법령 1부. 끝.

붙임 1 관련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-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, 1,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, 1,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.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 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 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 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 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 -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-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-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- 3. 통합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 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-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제정) 2020.12.31 조례 제1128호 (일부개정) 2021.12.31 조례 제122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 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 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 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통합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- 제3조(통합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- 제4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"예수금"이라 한다)
 -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-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-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 -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-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
- 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 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 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1.12.31.>
 - 2.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

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-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1.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 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- 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- 5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(「지방회계

- 법」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제8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- 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 - 4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 - 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 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8조(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 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때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(회계공무원)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 - 1. 통합기금운용과: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

- 2. 통합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담당자
-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)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(이하 "예탁부서"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예탁 시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 - 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지급한다.
- 제11조(예탁금 증서 교부)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통합기금의 융자)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한 다른 회계·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한다.
 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융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.

- 1.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
- 2. 재무구조 건전성
- 3. 상환 가능성
- ③ 통합기금의 융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,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융자기간)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제14조(융자신청 등)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(이하 "융자부서"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융자금의 원금 상환)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 시 결정한다.
 - 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 - 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, 이자,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.
 - 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, 연체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(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)을 상환일로 한다.

제16조(기간의 계산)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,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.